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방직 전환의 문제 및 합리적인 법률 개혁

김 성 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Localization of Extension Services: Problems and Rationale for Legal Reform

Sung Soo Kim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현재 국가직인 농촌지도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킬 경우의 문제에 대해 한국농촌지도학회는 지난 2년여동안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제 6개월 미만의 시한 속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 하며 농촌지도직공무원 지방직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지도사업은 농업 발전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국토 환경보전 및 국익관리 기능과,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 농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간 균형유지 기능임을 감안할 때, 국가적 기본 기능으로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는 지도직 공무원의 국가직 존치는 필요하다.

둘째,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결과 얻어진 새로운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구적인 국가교육사업으로 시험연구기능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방직 전환이 되면 중앙단위 시험연구기능과 농촌지도기능간의 상호 연계성이 약화되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은 극히 저

하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셋째, 지방직 전환이 될 경우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간 기술과 정보 이전이 제한되어 품목별로 과소 또는 과잉생산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며,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식량안보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넷째, 지도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의 문제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느냐의 차이에 있으며,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촌지도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에는 변동이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국의 98개 군중 82개 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여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지도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면 지방예산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섯째, UR 협상에 따른 WTO 체제에서도 국내보조금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하되, 지도사업,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점과 선진 외국의 경우를 감안할 때,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지도사업에 정부차원의 적

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화를 강조하면서 지방의 재정 형편이나 농촌지도사업의 국가적인 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지방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직 전환이 필요 하다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존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인건비와 전문화에 필요한 교육은 국가가 계속 담당하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하면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다.

개방과 국제경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지도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농민 곁에서 지식, 기술, 정보 제공의 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인력의 증원, 전문화를 위한 직전 및 현직 교육의 강화, 사기 양양을 획기적 인센티브의 제공 등도 근본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농민과 함께 주곡자급의 녹색혁명과 채소의 연중공급을 가능하게 한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자궁심과 사명감으로 제2의 녹생혁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농촌지도기능의 확충과 농촌지도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한 종합대책을 법률로서 수립, 실천하는 일이 농업, 농촌 발전의 바른 길이라 믿으며 입법부의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한다.